

음악학과 석사학위과정 졸업연주회 및 연주중심 학위청구논문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계명대학교 대학원(이하“대학원”이라 한다)음악학과 석사학위과정 학생의 졸업연주회 및 연주중심의 학위청구논문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9. 26.)

제2조(명칭) 졸업연주회의 명칭은 석사학위청구연주회(이하 “연주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연주회 계획) 발표자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연주회 계획을 수립하여 학과장의 주도 하에 연주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연주회 공고) 발표자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연주회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연주회 1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연주회 시기, 장소 및 시간) 발표자는 졸업예정학기 최소 1학기 이전(통상적으로 제3 학기)에 연주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교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60분내외의 곡을 연주하여야 한다. 다만, 오케스트라 지휘전공자와 합창지휘전공자의 졸업연주회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장소에 관한 한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심사위원 평가 및 결과보고) 학과장은 지도교수와 협의를 거쳐 학생 1인당 3명의 심사위원(지도교수 포함)을 선정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장은 연주회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한 후 심사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제7조(학위청구논문 제출) ① 음악학과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대학원 학칙 제7장에 의한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거나 이 지침에 의한 연주중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9. 9. 26.)

② 연주중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경우 학위청구논문의 내용은 연주회에 발표한 작품에 관한 내용이어야 한다.

③ 연주중심 학위청구논문의 분량은 800자 원고지 10매 이상이어야 한다.

제8조(재심사) 연주회 및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불합격한 학생은 다음 학기에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기타) ①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적용한다.(개정 2019. 9. 26.)

② 연구전공자는 2학기 중 실시하는 Joint Recital에서 30분 이상 연주하여야 한다.

③ 연주는 학과에서 지도교수 책임 하에 실시한다.

부 칙

1. 이 내규는 1994년 신입생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내규는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내규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내규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내규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지침은 201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